

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 설명

존경하는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
더불어민주당 종로구 제1선거구
고병국 의원입니다.

오늘 본 의원 발의한

「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
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(2019. 8. 6.)에
따라,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방법이 기존 ‘열람’의
방법에서 ‘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’으로 개정되었
습니다.

이에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관련 공개대상을
회의록과 심의자료로 구분하여, 심의자료의 경우 심의결과에
상관없이 심의 후 바로 공개토록 하고,
회의록 및 심의자료의 공개에는 기존 ‘열람’의 방법 외에
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을 추가함으로써,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,
시민의 알 권리를 고양시키고자 발의되었습니다.

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,
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
탁드립니다.

감사합니다.